

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1. 3. 2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11호로 2021년 2월 1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21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“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”의 범위를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한 조례
내용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 위반 소지 제거 및 상·하위 법령 간
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“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”의 범위에 단서 신설(안 제2조)

- 1) 상위법과 동일하게 단서 신설: “다만, 수사·변호 또는 재판에 부
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범죄피해자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(2021.1.14.~2.3./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,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에 대하여 정하고 수사·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안 제2조제1항제2호 후단에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은 상위 법령인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맞추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봄.

참 고 자 료

1 범죄피해자 보호법

제3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범죄피해자”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.
 2. “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”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,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수사·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
 3. ~ 6. 생략
-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.

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